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본 상품의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래별 개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 상품특징 : 급여이체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중기근로자 전용 입출금식 상품

2 거래 조건

·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 또는 비대면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 1. 1. 현재, 세전 기준)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 1인 1계좌
상품유형	• 보통예금, 저축예금
거래방법	 신규 :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큐브 해지 : 영업점, 비대면채널 (i-ONE Bank 등)
이자 지급시기	• 매월 2번째 토요일 결산 후 익일 지급
이자 산출근거	• 최초입금일(또는 지난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 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해당 이자율을 적용·계산
기본이자율	• 연 0.1% ※ 상기 이자율은 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됨

	우대 혜택	• 이 통장에 전월(1일~말일)에 다음의 급여이체 [*] 실적이 있는 경우, 당월(1일~말일)에 우대혜택(우대이자율, 수수료면제, 환율 우대) 제공 * 급여이체 실적조건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실적 인정) 1.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2. 지로, CMS,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① 우대이자율	잔액 구간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이하 금액에 우대이자율 적용	
	② 수수료 면제 (횟수제한 없음)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 당행 자동화기기(ATM/CD) 타행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ATM/CD) 출금 수수료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단, 이 통장의 최초 가입(또는 최초 전환)일부터 익월 말까지 조건 없이 해당 수수료를 면제		
	③ 환율 우대	• 주요 외국통화(USD·JPY·EUR) 환율 80% 우대 (환전 및 해외 당발송금)		
중복가입 제한상품		•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 IBK W통장, 新IBK급여통장, IBK급여통장, I-Plan급여통장		
원금 및 이자지금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이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저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등	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네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응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예금자보호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금융상품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		
거래중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이관 등의 거래 제한 예금잔액 10,000원 미만 1년 이상 입출금식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2년 이상 입출금식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3년 이상 입출금식 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은행은 법령, 타인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휴면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음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을 통해 조회 가능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관계법 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연계·제휴서비스

구 분	내 용
연계·제휴서비스	• IBK사이버문화센터 무료수강 서비스 - 이 통장 가입고객은 IBK사이버문화센터(http://happy.ibk.co.kr)를
내용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 - 주요수강 내용은 외국어, 컴퓨터 활용, 생활교양 등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IBK기업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 무료수강기간은 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
제공기간	- 단, 은행은 무료수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계·제휴서비스	 서면, 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종료에 대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사전통지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 이 상품을 가입하고 활동좌를 보유한 경우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 하려는 목적으로 이용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함
경과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시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시간